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함. 이는 현행 조례에서 근거규정으로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개정(시행. 2014.9.25.)으로 삭제되고, 동시에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14.9.25.)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임.
-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제4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별표>에 위반 행위별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함.
-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한자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 ~ 안 제9조)
- 한편, 위반 행위별 타 구의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아래와 같음.
(나머지 8개 구의회는 부과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연번	구의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선서·증언 거부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1	서대문구의회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송파구의회	200만원~300만원	100만원~200만원	400만원~500만원
3	노원구의회	100만원~300만원	50만원~100만원	300만원~500만원
4	강서구의회	50만원~300만원	50만원~200만원	100만원~500만원
5	강남구의회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6	동작구의회	100만원~300만원	50만원~100만원	300만원~500만원
7	성동구의회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300만원~500만원
8	금천구의회	300만원(증언거부)	500만원	500만원
9	강북구의회	100만원~200만원	50만원~100만원	200만원~300만원
10	은평구의회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1	관악구의회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300만원~500만원
12	서초구의회	200만원~300만원	100만원~200만원	400만원~500만원
13	중구의회	50만원~100만원	50만원~1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200만원
				불응 2회: 200만원~300만원
				불응 3회: 300만원~500만원
14	강동구의회 (선서거부)	50만원~100만원	100만원~2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200만원
				불응 2회: 200만원~300만원
				불응 3회: 300만원~500만원
15	마포구의회	선서거부: 100만원~200만원	300만원~5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200만원
		증언거부: 50만원~100만원		불응 2회: 200만원~300만원
				불응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
16	도봉구의회	~100만원	~1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150만원
				불응 2회: 150만원~300만원
				불응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서류의 미제출, 증인의 불출석 및 선서·증언 등의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하한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7/으로써 행정의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
----------	-----

발의년월일: 2023. 6.

발의자: 전승관, 이순우, 임헌호

유승용, 남완현 의원(5인)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8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로 하고,

제2조 중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을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제1항 제3호 “법 법 제163조에”를 “법 제163조에”로 하며 제5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로 한다.

제7조 중 제1항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로 한

다. 같은 조 제2항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8조 중 제1항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제3항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같은조 제4항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제3항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 관련)

위반행위별	부과금액
증인 출석을 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생략)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영등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영등포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